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우애를 기반으로 나와 우리 이웃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함께 사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익 및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과 공정무역, 지역화폐 등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 삶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1.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
2. 자율적 운영
3. 민주적 의사결정
4. 잉여나 소득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

1991.Defourny

"공공성, 공동체, 인간중심"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더불어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돌아갑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지정한 기관 및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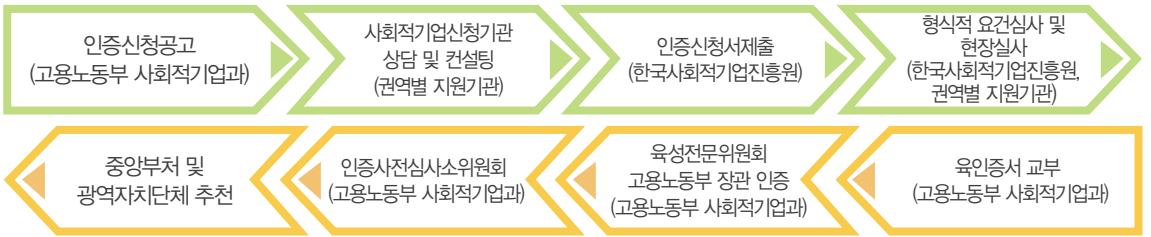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지정 절차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구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법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수행(매출규모 무관)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시설비 등 지원 ④ 세제 지원 ⑤ 사회보험료 지원 ⑥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⑦ 인건비 지원 ⑧ 사업개발비 지원 ⑨ 모태펀드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관별 차이 있음) ③ 인건비 지원 ④ 사업개발비 지원 ⑤ 모태펀드

협동조합기본법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기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사업범위	의결권	책임범위	가입 · 탈퇴	배 당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2. 경제 ·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참여를 확대

3. 기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 (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 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 조합수 3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 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 ~ 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 주간(그 전 1주간)추구금지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증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법인격]도입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사단법인 등)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2층 구조)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밥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 금지
철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 주체의 구성, 자원, 행동양식 등이 마을 공동체에 기반 한 비즈니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정자치부)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요소

– 지역성 : 주체의 구성, 자원의 기반
–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수요 공급, 시장성
– 운영의 공동체성 : 민주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 커뮤니티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주민 출자, 직접 생산, 소비)
– 전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일자리, 산업의 발전, 지역자원의 선순환

생존전략

– 지역기반 : 관계망
– 그물망 경제 :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연계 사업과의 촘촘한 이해관계

활성화방안

– 돈 보다는 사람(주체)과 기회에 대한 지원
– 정부의 불균형 해결 : 지역자원, 기회

■ 선정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함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선정 절차

1. 신규 선정사업

– 기초 시·군·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 선정 및 광역 시·도 추천
– 광역 시·도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행정자치부에 제출
– 광역 시·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 점검

2. 2차년도 지원사업

– 1차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자립가능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에 제출
– 광역 시·도와 컨설팅수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장 현지점검
– 기초 시·군·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역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여부 최종결정